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37-70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생활안전팀
Phone 02)3460-3481, 3485, 3486
Fax 02)529-0407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Phone 02)794-4560
Fax 02)796-4995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9·8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09년 8월 26일(수) 14:00~16:3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주최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09년 8월 26일(수) 14:00~16:3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주최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진행순서

사회 : 손성락 본부장 (한국소비자원)

14:00~14:05 **개 회 사**

김정숙 회장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14:05~14:10 **격 려 사**

김범조 원장 직무대행 (한국소비자원)

14:10~14:50 **주제발표**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

최은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장)

14:50~15:00 **Coffee break**

15:00~16:15 **지정토론**

좌장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신숙자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권혁선 ((사)한국결혼상담소협회 경기지회장)

박강구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가족권익담당)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6:15~16:30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

최 은 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장)

목 차

Ⅰ. 연구배경
Ⅱ. 조사대상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일반적 특성
Ⅲ.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조직과 매출현황
Ⅳ. 회원관리 및 운영실태
Ⅴ. 국제결혼 중개 후 사후관리
Ⅵ. 현행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최은실

< 목차 >

Ⅰ. 연구배경

Ⅱ. 조사대상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일반적 특성

Ⅲ.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조직과 매출현황

Ⅳ. 회원관리 및 운영실태

Ⅴ. 국제결혼 중개 후 사후관리

Ⅵ. 현행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Ⅰ. 연구 배경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우리나라 국제결혼 실태 및 다문화 가정 현황

1-1. 우리나라 국제결혼 실태



-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

  – 4,710건 (1990년) → 36,204건 (2008년) 급증
  - 외국인 남성 + 한국인 여성: 4,091건 (1990년) → 8,041건 (2008년)
  - 한국인 남성 + 외국인 여성: 619건 (1990년) → 28,163건 (2008년)

- **한국인 남성+외국인 여성 국적별 혼인건수 (2008년)**

  - 중국 13,203건 (46.9%) – 베트남 8,282건 (29.4%) – 필리핀 1,857건 (6.6%)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여성과의 혼인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에서 8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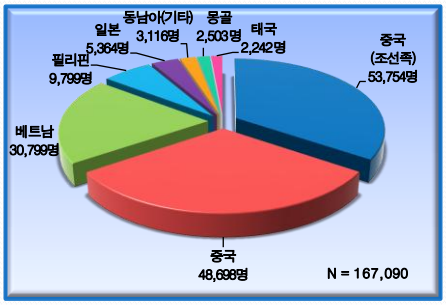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우리나라 국제결혼 실태 및 다문화 가정 현황

1-2. 다문화 가정의 증가

-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급증**
  - 결혼이민자 167,090명 중 여성이 149,853명 (90%), 남성이 17,237명 (10%) (08년 5월)

[결혼이민자 국적별 및 지역별 체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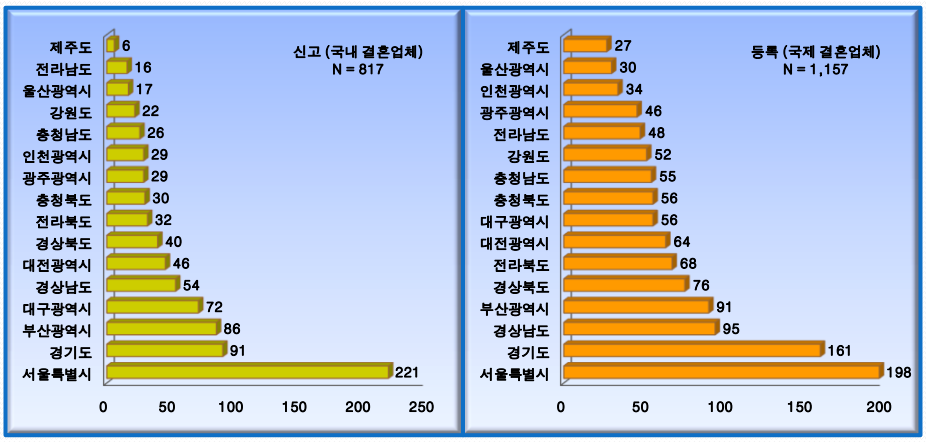
서울	39,275	강원	4,188
인천	10,485	경북	8,057
경기	44,760	경남	9,586
충북	4,927	대구	4,965
충남	8,003	울산	2,950
대전	3,623	부산	7,526
전북	6,743		
전남	7,290		
광주	3,267		
제주	1,444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우리나라 국제결혼 실태 및 다문화 가정 현황

1-3. 우리나라 결혼중개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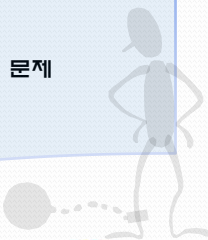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우리나라 국제결혼 실태 및 다문화 가정 현황

1-4. 국제결혼 중개업의 문제점

- **국제결혼 상당수가 결혼중개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

  - 대부분 영세업체, 다양한 중개수수료, 집단 맞선 등 현지 법률 위반으로 국가이미지 훼손
  - 주요민원 사항: 추가비용 요구, 허위정보 제공, 현지 브로커 문제
  - 표준약관 등 제도적 정비 미비로 소비자 피해 발생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연구내용 및 방법



우편설문 조사실시

- 국제결혼 중개업으로 등록된 1,040개 대상
- 기간: 2009년 6월~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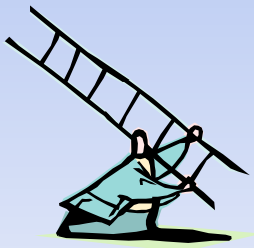
설문내용

- 사업 규모
- 종업원 수
- 자본금 및 수입
- 국제결혼 중개 이용료 현황
- 계약서 내용 등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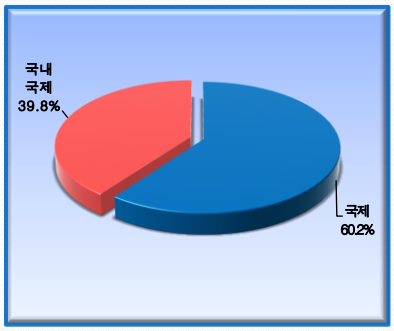
Ⅱ. 조사대상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일반적 특성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영실태

취급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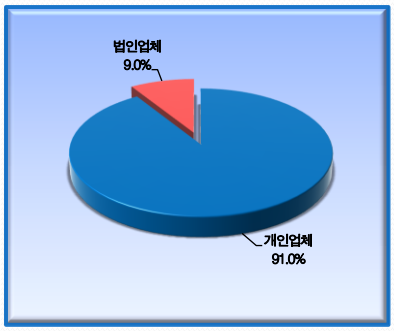
- 설문에 응답한 266개 업체의 60.2%가 국제결혼만을 취급
  -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39.8%임

구분	국제	국내&국제	계
빈도	160	106	266
비율	60.2	39.8	100.0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영실태

업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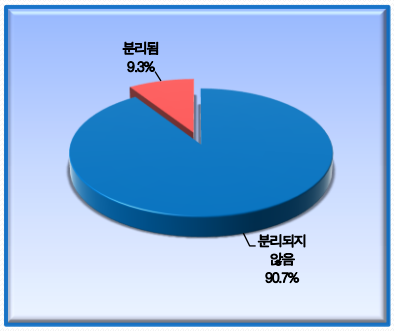
구분	개인업체	법인업체	계
빈도	242	24	266
비율	91.0	9.0	100.0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업체 형태를 보면, 91.0%가 개인 업체로 법인의 형태는 9.0%에 불과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영실태

소유/경영 분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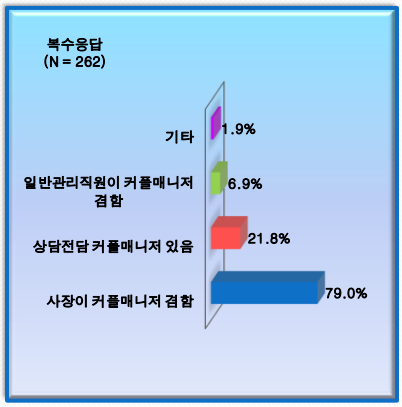
구분	분리되지 않음	분리됨	계
빈도	235	24	259
비율	90.7	9.3	100.0

- 업체 대부분인 90.7%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영실태

업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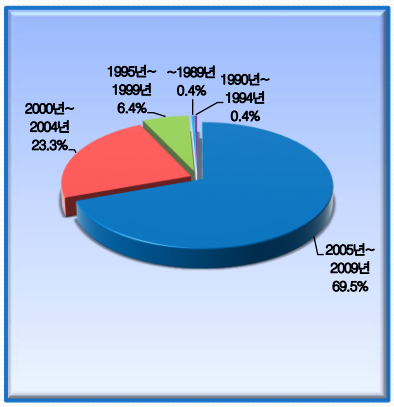


- 결혼중개업무를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사장이 커플 매니저를 겸하고 있다는 답변이 79.0%임
  - 상담전담 커플매니저를 두고 있는 업체는 21.8%에 불과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영실태

설립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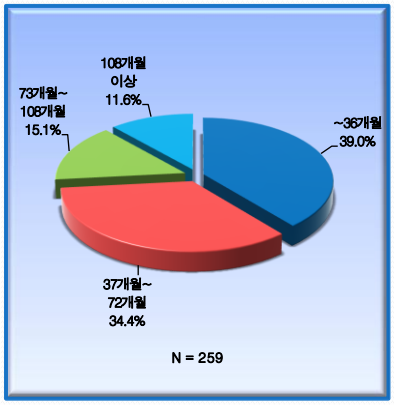
- 설립연도를 보면, 69.5%가 2005년~2009년 설립되어 대부분이 국제결혼이 성행된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
  - 국제결혼중개업으로의 등록 등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에 설립된 업체는 45.1%였음

구분	빈도	비율
2005년~2009년	185	69.5
2000년~2004년	62	23.3
1995년~1999년	17	6.4
1990년~1994년	1	0.4
~1989년	1	0.4
계	266	100.0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국제결혼 중개업 대표자의 직업경력과 만족도 등

결혼중개업 종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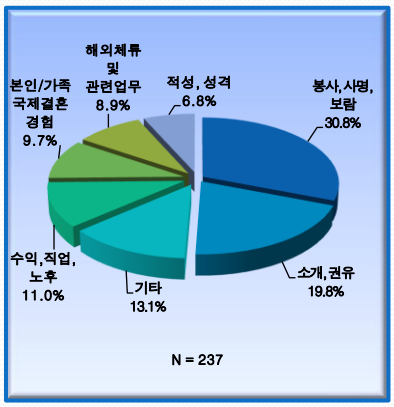


- 국제결혼 중개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국제결혼 중개업무 종사기간은 평균 3년 3개월이었으며, 3년 이하가 전체의 39.0%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초과~6년 이하 (3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국제결혼 중개업 대표자의 직업경력과 만족도 등

국제결혼중개업 운영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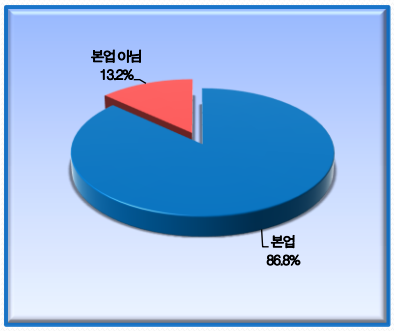


-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보면, 봉사나 사명감, 보람 등의 다소 비영리적인 이유가 30.8%로 가장 많았음
  - 뒤이어 주변의 소개나 권유 (19.8%), 수익 · 직업 · 노후보장 등의 경제적 이유 (11.0%), 본인이나 가족의 국제결혼 경험 (9.7%), 해외체류 및 관련 업무 경험 (8.9%) 등 순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국제결혼 중개업 대표자의 직업경력과 만족도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본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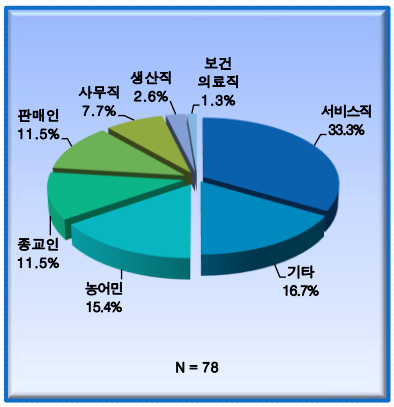
구분	본업	본업 아님	계
빈도	223	34	257
비율	86.8	13.2	100.0

- 현재 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이 본업인 비율은 86.8%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국제결혼 중개업 대표자의 직업경력과 만족도 등

국제결혼중개업 이외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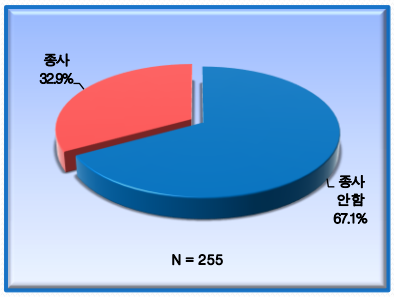


- 국제결혼 중개업 이외의 직업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29.3%인 78명이었으며,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직이 33.3%로 가장 많고 농어민(15.4%), 판매인과 종교인이 각각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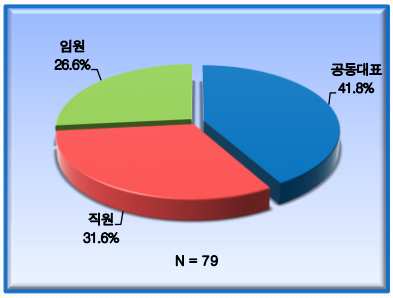
2. 국제결혼 중개업 대표자의 직업경력과 만족도 등

대표자의 배우자 회사 관여 정도



- 국제결혼중개업 대표자의 배우자가 회사 임직원으로 종사하는 비율은 전체 (255명) 의 32.9%로 나타났음

임직원 종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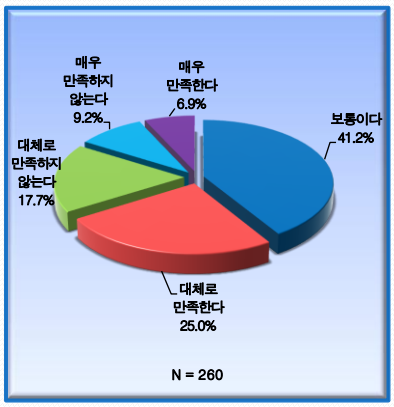


- 종사형태를 보면, 공동대표가 41.8%로 가장 많았고, 직원 (31.6%), 임원 (26.6%) 순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국제결혼 중개업 대표자의 직업경력과 만족도 등

대표자의 국제결혼 중개업 만족도



- 현재 종사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3으로 중간 정도이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26.9% 정도였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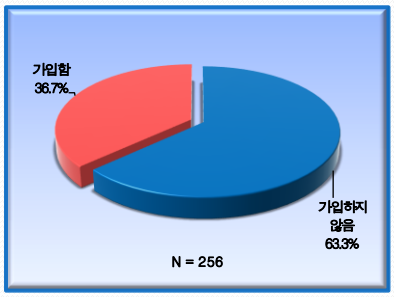
Ⅲ.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조직과 매출현황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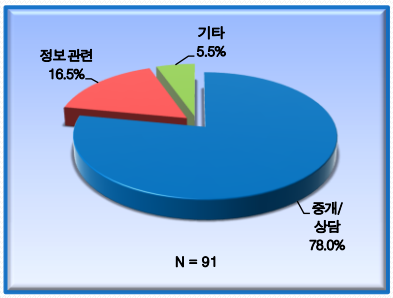
1. 결혼 관련 협회나 단체 가입현황

결혼 관련 협회나 단체 가입 현황



- 업체가 속한 결혼관련 협회나 단체가 있는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업체의 63.3%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함

가입한 협회나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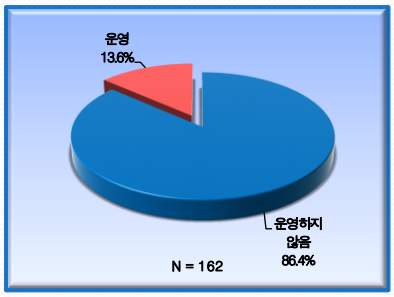


-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업체의 78.0% 는 결혼상담 (중개) 협회이며 결혼정보협회는 16.5%였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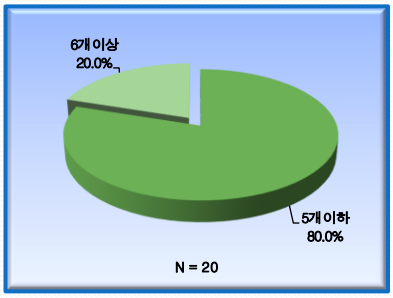
2. 본사 이외의 국내 지사 운영 현황

운영 여부



- 국내에 본사 이외 다른 지사를 운영하는지에 대해 응답한 162개 업체의 86.4%가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함

운영하는 국내 지사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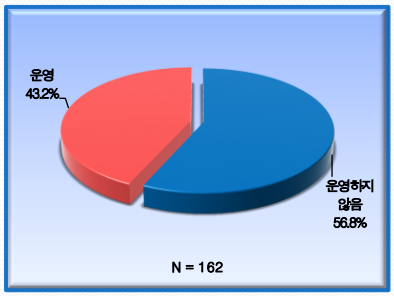


- 운영하는 국내 지사 현황에서 응답자 대부분인 80%가 5개 이하라고 답함 (평균 5.45개 운영)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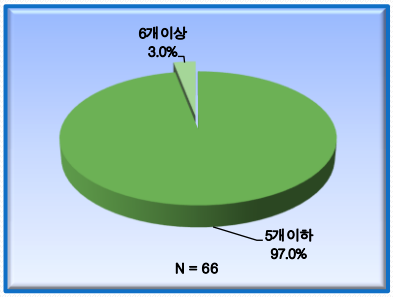
3. 해외 지사 운영 현황

운영 여부



- 현재 해외에 지사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6.8%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함

운영하는 해외 지사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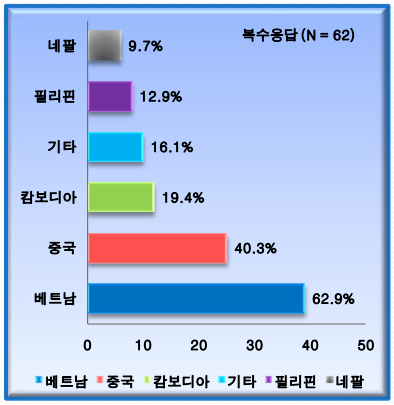


- 운영하는 해외 지사 현황에서는 97.0%가 5개 이하라고 답함 (평균 1.74개 운영)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3. 해외 지사 운영 현황

해외지사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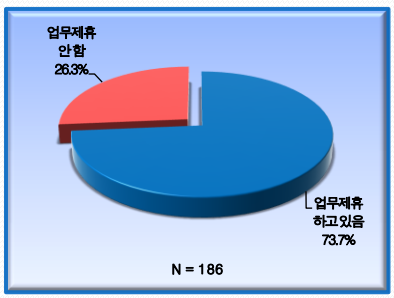
-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업체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아 62.9%의 업체가 해외 지사를 두고 있었으며 중국 (40.3%), 캄보디아 (19.4%), 필리핀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베트남	39	62.9
중국	25	40.3
캄보디아	12	19.4
기타	10	16.1
필리핀	8	12.9
네팔	6	9.7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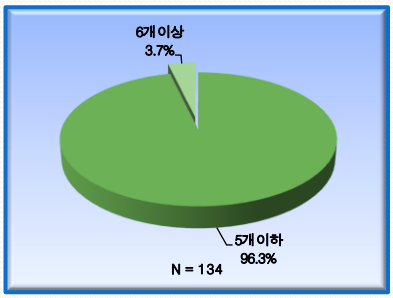
4. 국제결혼 업무 제휴 현지 업체 현황

제휴 여부



- 응답업체의 73.7%가 현지업체와 제휴하고 있어 직접 해외 지사를 운영하기보다 현지 제휴 업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지업체 제휴 국가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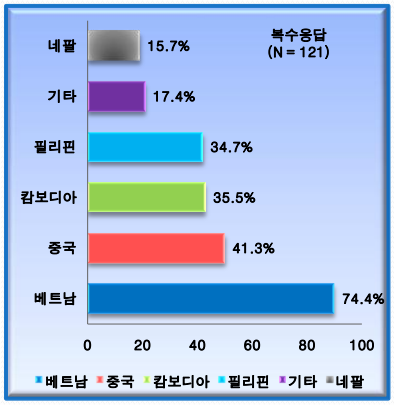


- 현지업체 제휴를 맺고 있는 국가 수는 평균 2.2개국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4. 국제결혼 업무 제휴 현지 업체 현황

현지업무 제휴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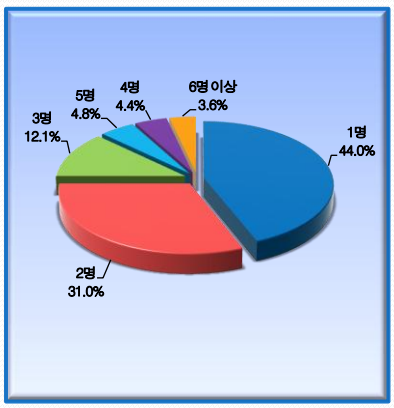
- 국가별로 보면 역시 베트남이 가장 많아 전체 응답업체의 74.4%가 현지 업무 제휴업체를 두고 있으며 중국(41.3%), 캄보디아 (35.5%), 필리핀 (34.7%) 등의 순이었음

구분	빈도	비율
베트남	90	74.4
중국	50	41.3
캄보디아	43	35.5
필리핀	42	34.7
기타	21	17.4
네팔	19	15.7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5.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직 및 규모

임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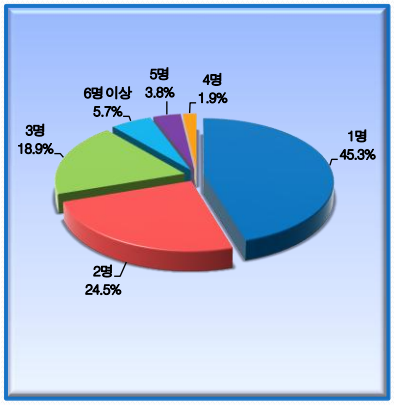
- 임직원 수는 평균 2.15명으로 대표자 혼자 운영한다는 답변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임직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체는 전체 응답 중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평균
1명	109	44.0	2.15명
2명	77	31.0	
3명	30	12.1	
4명	11	4.4	
5명	12	4.8	
6명 이상	9	3.6	
계	248	100.0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5.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직 및 규모

상담전담 커플매니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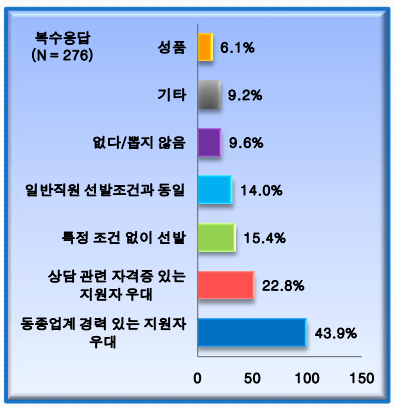
-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전담 커플 매니저를 두고 있는 업체는 21.8%에 불과함
- 상담 전담 커플 매니저를 운영하는 업체(53개 업체)의 평균 커플매니저 수는 2.19명으로 나타났으며, 커플 매니저 수가 6명 이상인 업체는 5.7%에 불과함

구분	빈도	비율	평균
1명	24	45.3	2.19명
2명	13	24.5	
3명	10	18.9	
4명	1	1.9	
5명	2	3.8	
6명 이상	3	5.7	
계	53	100.0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5.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직 및 규모

커플매니저 모집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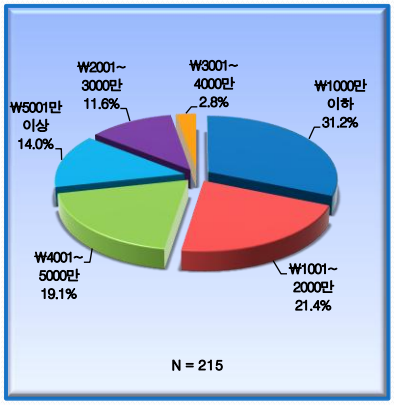


- 커플 매니저 채용조건을 보면,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가 43.9%로 가장 많았음
- 그러나 특정조건 없이 선발하거나(15.4%), 일반직원과 동일조건으로 선발 (14.0%)하거나 성품 (6.1%) 등으로 선정하는 등 전문성 고려 없이 선발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5.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직 및 규모

자본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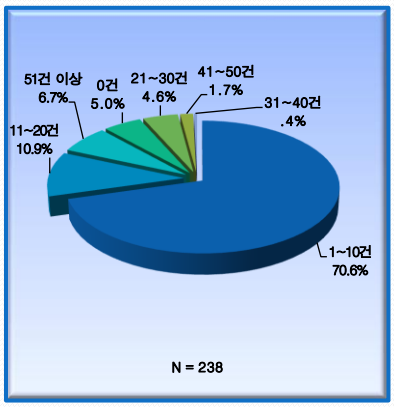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규모를 보면, 평균 4,04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4,000 만 원 이하가 과반수인 55.4%로 전체적으로 매우 영세한 것으로 보임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6. 업무실적 및 매출현황

월 평균 결혼상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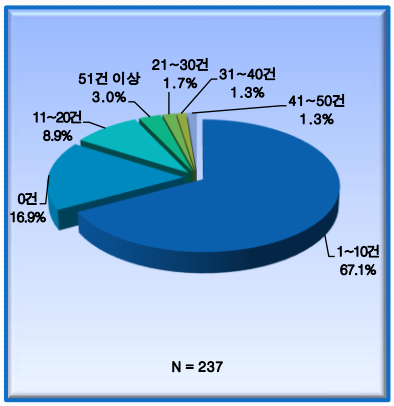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월 평균 상담건수는 18.23건이며 전체 응답업체의 75.6%가 월 평균 10건 이하의 결혼상담실적이 있는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6. 업무실적 및 매출현황

연 평균 국제결혼 성혼건수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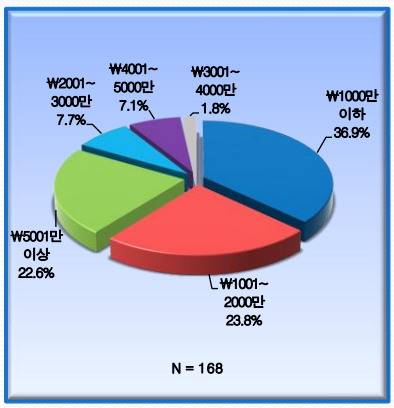


- 연 평균 국제 결혼 성혼 건수는 2008년 기준 8.81건이며 응답 업체 중 67.1%가 연 1~10건의 성혼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며 1건도 성혼하지 못한 업체도 5.0% 나 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6. 업무실적 및 매출현황

연 매출액 현황 (2008년)



- 2008년 기준으로 연 매출액 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 업체 평균은 4,808 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 매출액 1,000 만 원 이하 업체가 36.9%로 가장 많았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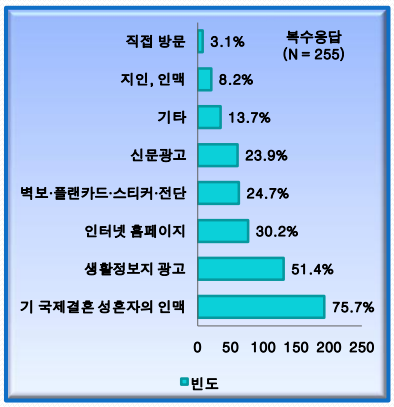
Ⅳ. 회원 관리 및 운영 실태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회원관리

내국인 회원 모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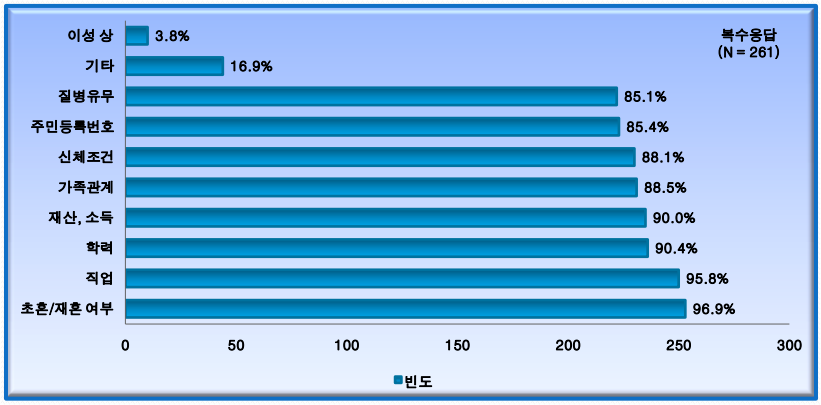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내국인 회원 모집방법을 보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응답 중에 75.7%가 이를 이용하고 있었음
  - 다음으로 생활정보지 광고 (51.4%), 인터넷 홈페이지 (30.2%), 벽보 · 플랜카드 · 스티커 · 전단 (24.7%), 신문광고 (23.9%) 등 순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회원관리

내국인 회원 가입 시 제공사항

- 회원가입 시 맞선 상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회원들이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상태 (초혼/ 재혼 여부 등)가 96.9%로 가장 많았고, 직업 (95.8%), 학력 (90.4%), 재산 · 소득 (90.0%), 가족관계 (88.5%)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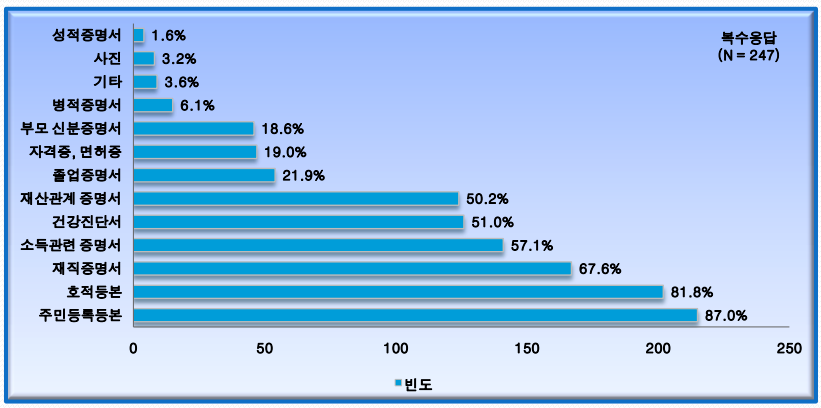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회원관리

내국인 회원 가입 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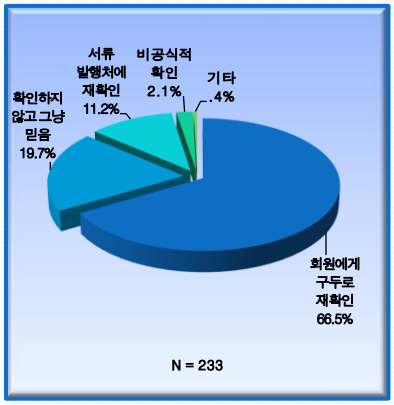
- 내국인 회원가입 시 업체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역시 혼인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 87.0%로 가장 많았고, 호적등본 (가족관계부) (81.8%), 재직증명서(67.6%), 소득관련증명서 (57.1%) 등의 순이었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회원관리

제출서류의 검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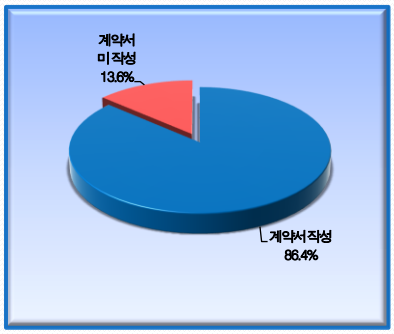


- 한편 회원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회원에게 구두로 재확인 한다는 응답이 66.5%였으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는 응답도 1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국제결혼 중개관련 계약서

계약서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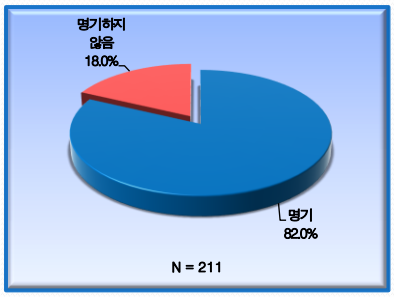
구분	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작성	계
빈도	222	35	257
비율	86.4	13.6	100.0

- 국제결혼의 특성상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바,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업체의 86.4%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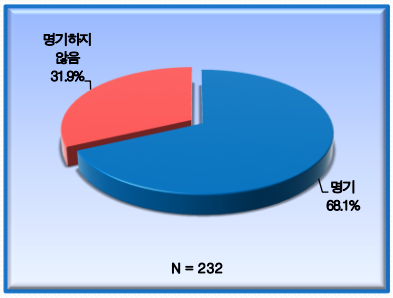
2. 국제결혼 중개관련 계약서

위약금 지급 명기 여부



- 계약서 작성 시 업체의 문제로 성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기하는 비율은 전체의 82.0%로 나타남

정보유출 귀책사항 명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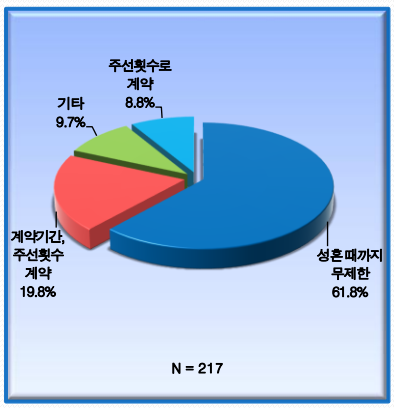


- 업체가 수집한 회원정보유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기하는 업체는 68.1%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3. 운영실태

맞선 주선횟수 계약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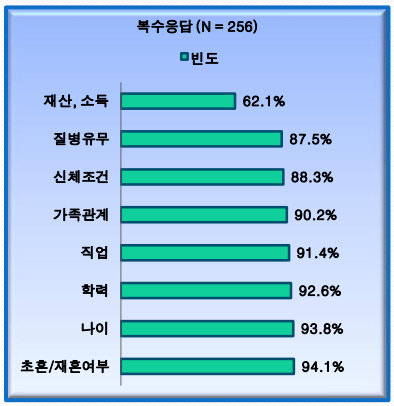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맞선 주선계약 형태를 보면, 성혼 때까지 맞선주선을 한다는 답변이 6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일정한 계약기간과 주선횟수로 제한하는 경우 (19.8%), 주선횟수로만 제한 (8.8%) 등의 순이었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3. 운영실태

한국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예비배우자 신상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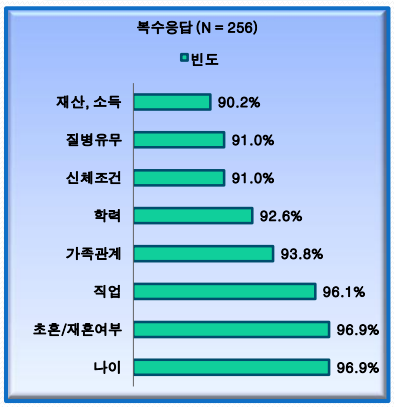


- 업체들이 한국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 중 가장 많은 것은 혼인관계 (초혼/재혼 여부)였으며 (94.1%), 나이 (93.8%), 학력 (92.6%), 직업 (91.4%) 등의 순이었음
  - 재산 · 소득 정보 제공은 62.1%에 불과하여 외국인 예비배우자들의 재산 · 소득을 신상정보로 제공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3. 운영실태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제공하는 한국인 회원의 신상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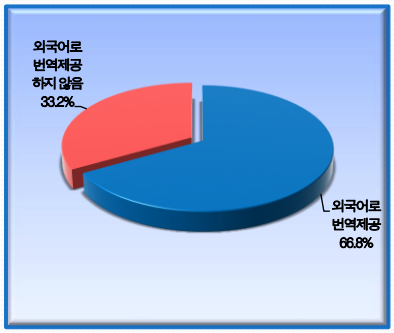


- 업체들이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한국인 회원의 신상 정보 중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혼인관계 (초혼/재혼 여부)와 나이로 각 96.9%였고, 가족관계 (93.8%), 학력 (9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3. 운영실태

한국인 회원정보 번역제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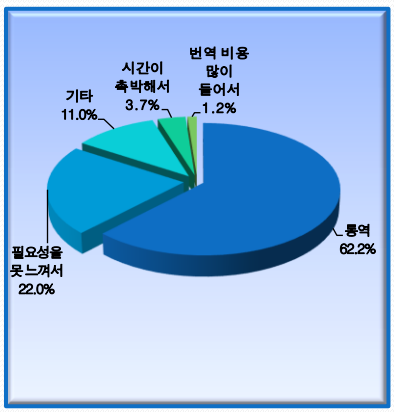
구분	외국어로 번역제공	외국어 번역 제공하지 않음	계
빈도	169	84	253
비율	66.8	33.2	100.0

-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한국인 회원정보를 번역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66.8%로 33.2%의 업체가 회원정보를 번역해서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시행령 3조 번역본 제공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3. 운영실태

번역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회원정보를 번역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통역을 통해 구두로 제공하므로 서면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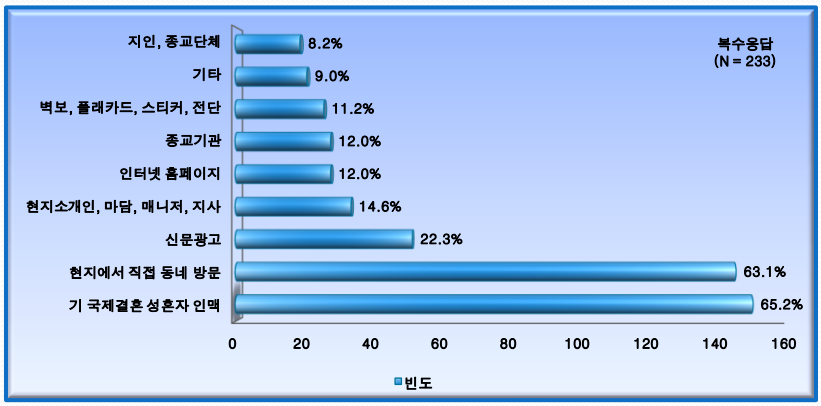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통역	51	62.2
필요성을 못 느껴서	18	22.0
시간이 촉박해서	3	3.7
번역 비용이 많이 들어서	1	1.2
기타	9	11.0
계	82	100.0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3. 운영실태

현지의 외국인 예비 배우자 모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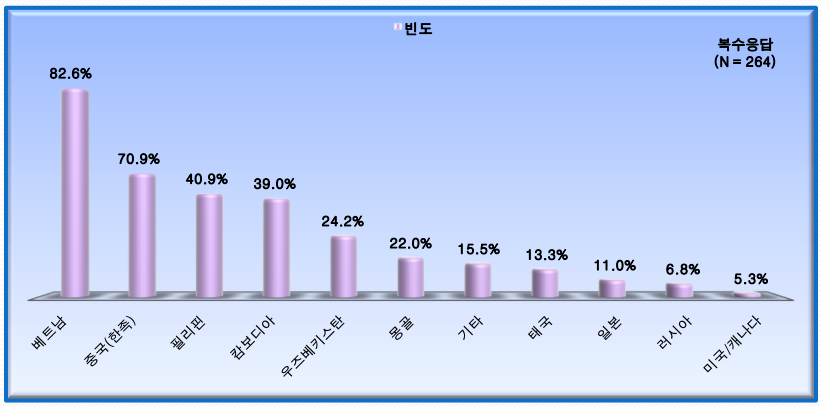
- 이미 국제 결혼한 성혼자의 인맥을 이용하는 경우가 65.2%로 가장 많았고 현지에서 예비 배우자를 이 거주하는 동네를 직접 방문하여 모집한다는 게 (63.1%),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모집방법이었을
- 내국인 회원모집방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신문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미약함



3. 운영실태

맞선 주선 국제결혼 대상국 현황

- 국제 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하는 상대 국가의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82.6%로 대부분의 업체를 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중국 (20.9%), 필리핀 (40.9%), 캄보디아 (39.0%), 우즈베키스탄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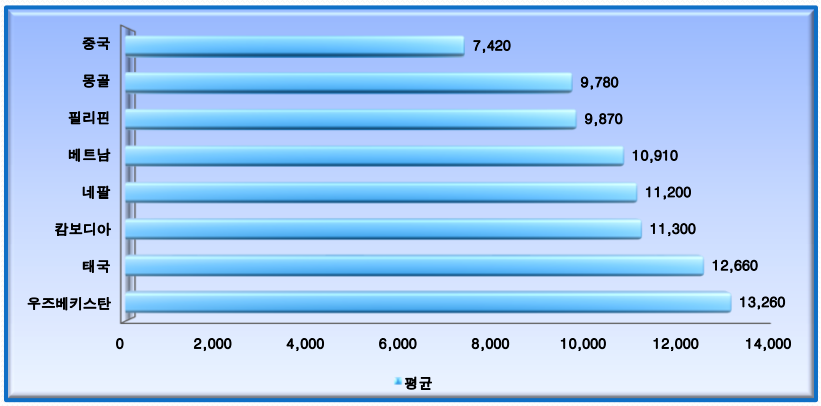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3. 운영실태

국가별 국제결혼 진행을 위한 한국회원의 지불 중비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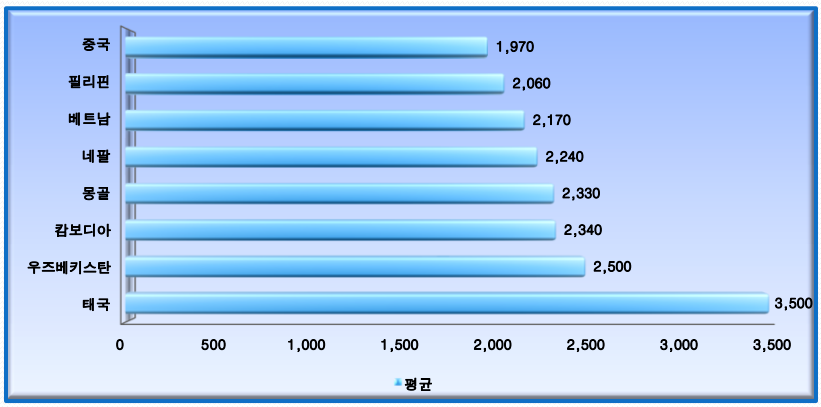
- 국가별로 한국 회원이 지불하는 비용을 알아본 결과, 우즈베키스탄이 1,32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태국 (1,266만 원), 캄보디아 (1,130만 원) , 네팔 (1,12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현재 국제결혼 상대국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베트남은 1,091만원으로 나타남.



3.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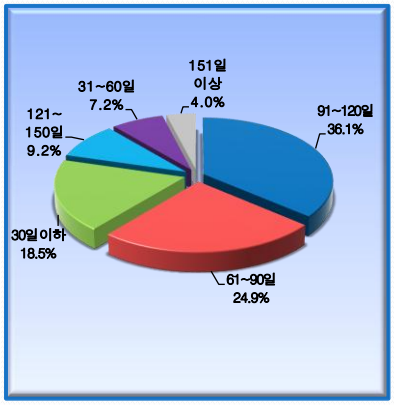
국가별 업체 순이익 [단위: 천원]

- 회원들이 지불한 비용에서 실비용을 제외한 업체 순이익을 알아본 결과, 태국이 3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 (250만 원), 캄보디아 (234만 원), 몽골 (23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운영실태

국제결혼 성혼 추진기간



- 내국인 회원이 출국해서 맞선 , 결혼 등의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7.68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평균
91~120일	90	36.1	87.68일
61~90일	62	24.9	
30일 이하	46	18.5	
121~150일	23	9.2	
31~60일	18	7.2	
151일 이상	10	4.0	
계	2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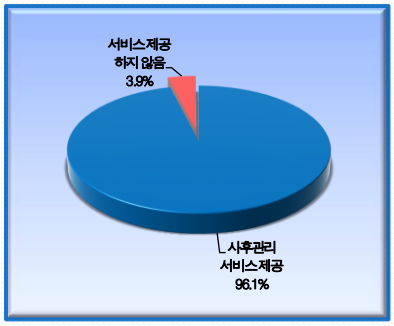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V. 국제결혼 중개 후 사후관리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국제결혼 중개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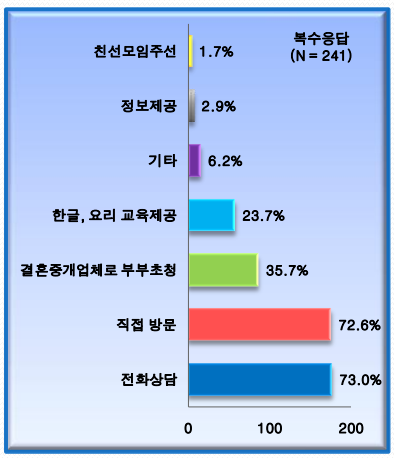
구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제공하지 않음	계
빈도	244	10	254
비율	96.1	3.9	100.0

- 국제결혼 중개 이후 성혼된 부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 업체 (96.1%)가 제공한다고 답변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국제결혼 중개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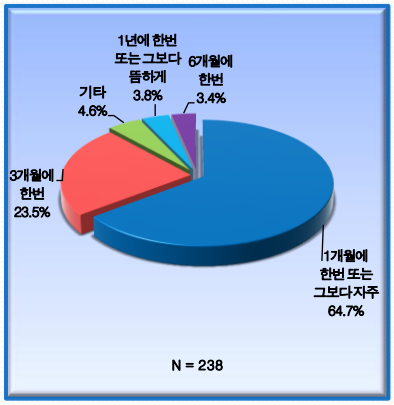


- 사후관리 서비스의 제공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전화상담 (73.0%), 직접 방문해 상담 (72.6%)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으며, 업체로 부부 초청하거나 (35.7%), 직접 교육을 제공 (23.7%)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국제결혼 중개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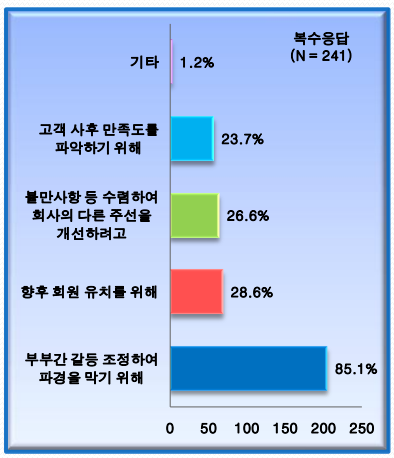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빈도는 1개월에 1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64.7%), 3개월에 1회 (23.5%) 등의 순이었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국제결혼 중개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유



- 업체들이 성혼한 부부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로는 부부간 갈등을 조정하여 파경을 막기 위함이 85.1%로 가장 많았고, 향후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28.6%), 불만사항 수렴하여 업무를 개선 (2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업체 입장에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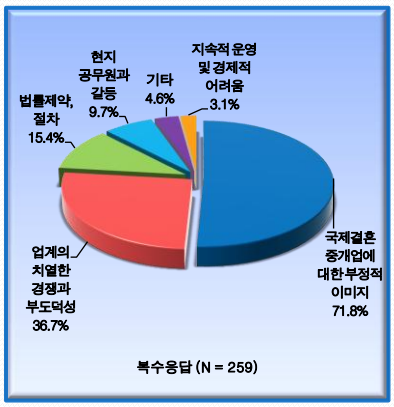
VI. 현행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운영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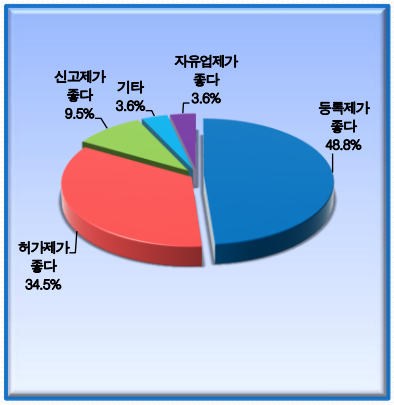


-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상 어려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7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부도덕성 (36.7%), 법률적 제약과 절차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지 국 공무원과의 갈등 (9.7%)과 경제적인 어려움 (3.1%)도 있었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현행 중개업제도에 대한 의견



- 현행 국제 결혼 중개업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현행 제도가 좋다는 의견 (48.8%)이었고, 좀 더 강화된 허가제로 가자는 의견도 3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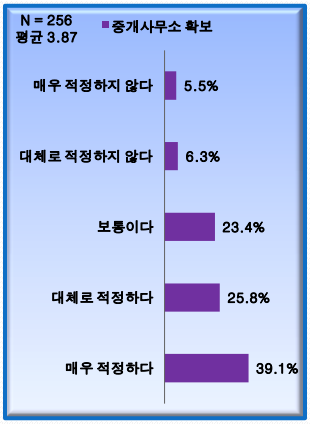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현재의 등록제가 좋다	123	48.8
허가제가 좋다	87	34.5
신고제가 좋다	24	9.5
기타	9	3.6
자유업제가 좋다	9	3.6
계	2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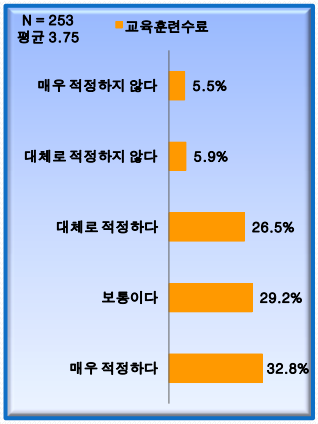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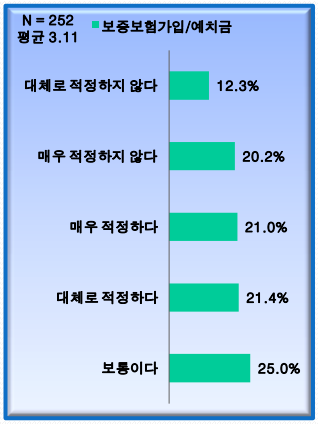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현행 등록요건에 대한 의견

- 현행 중개업 제도의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확보 (3.87), 교육훈련수료 (3.75), 보증보험/예치금 (3.11) 순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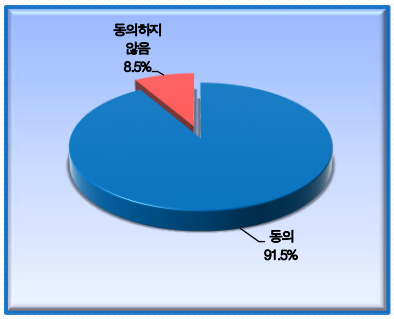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등록번호/업체 명 광고 명기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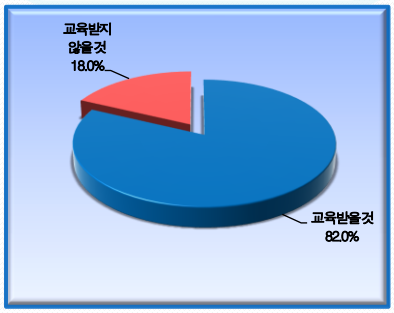
구분	동의	동의하지 않음	계
빈도	236	22	258
비율	91.5	8.5	100.0

- 업체가 광고 (TV, 신문, 잡지, 벽보, 전단 등)를 할 경우에 등록번호와 업체 명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 (91.5%)가 찬성하고 있었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국제결혼 관련 업무 종사자 (커플 매니저 등) 교육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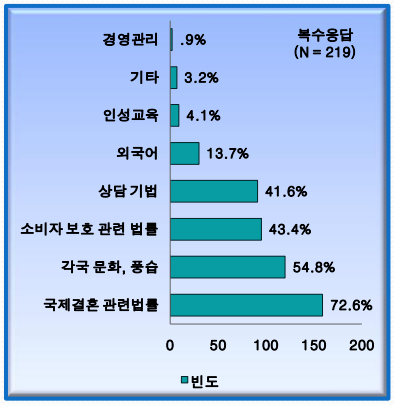
구분	교육받을 의사 있음	교육 받을 의사 없음	계
빈도	205	45	250
비율	82.0	18.0	100.0

- 정부가 커플매니저 등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의 82.0%가 교육이 실시되면 받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었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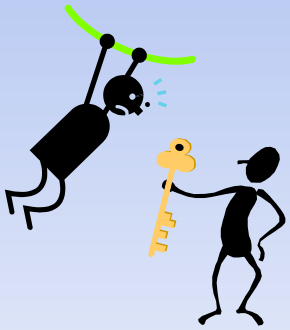
국제결혼관련 업무 강화



-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국제결혼 관련 법률 (72.6%), 각국의 문화와 풍습 (54.8%),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43.4%), 상담기법 (4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문제점

□ 현재 등록된 국제 결혼 중개업의 열악한 경영체제와 비전문성

- 91.0%가 개인업체이며 대부분 (90.7%)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
-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는 업체가 79.0%
- 임직원 수 평균 2.15명, 자본금 규모 평균 4,047만원 (과반수인 55.4%가 자본금 4,000만원 이하), 연 매출액 평균 4,808만원 (연 매출액 1,000만원 이하가 36.9%) 로 열악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문제점

□ 국제결혼 중개 해당 국가의 해외지사 미운영 등 조직 운영의 미비점

- 해외에 지사를 운영하는 업체가 43.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업체 (73.7%)가 현지에 업무제휴업체를 두고 있음

□ 국제결혼 중개 추진 시 상대국가 언어번역 미제공, 모집방법의 영세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

- 맞선 주선 시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한국인 회원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업체는 66.8%이며, 미 제공 이유로 구두로 통역해서 제공한다고 답변 (62.2%)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1. 문제점

□ 국제결혼 중개업 표준약관 미제정으로 위약금 지급, 정보유출 귀책사항, 맞선 주선 계약 형태 등의 혼란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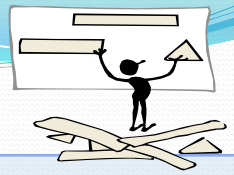
□ 대다수의 업체가 결혼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 미가입되어 있어 열악한 운영 및 영업 행태를 보완할 구심점이 부재

- 전체 업체의 63.3%가 결혼관련 협회나 단체에 미가입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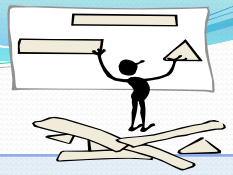


□ 현행 국제결혼중개 관리 제도의 보완

- 관련제도의 보완 및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업체의 자연적 퇴출 유도
  - 커플매니저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실시
  - 업체가 광고 시 등록번호, 업체 명 명시토록 하는 제도 도입
- 국제결혼 표준약관의 조속한 제정
  -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 예정
  - 주요내용: 중개기간, 수수료, 사후관리, 개인정보보호규정 등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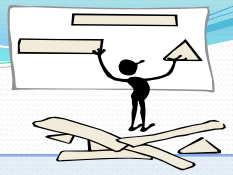


□ 현행 국제결혼중개 관리 제도의 보완

- **외국 현지 제휴업체에 대한 관리**
  -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73.7%가 현지업체와 제휴하고 있는 바, 현지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관계 및 관리방안 규정 필요
- **회원 정보 보호의 강화**
  - 회원 개인정보 및 초상권 등이 개인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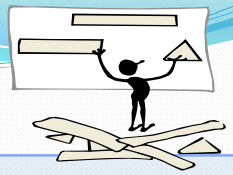


□ 국제결혼중개업 및 관련 협회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화

-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영세성 및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한 폐해 최소화**
  -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업체 대형화, 비영리 성격의 국제결혼중개업 운영
- **공익적인 결혼중개 관련 협회 활동 활성화 필요**
  - 업체들의 구심이 되며 모범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육성, 교육하는 업무 수행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2. 개선방안



□ 국제결혼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국제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 및 가족에게 정확한 국제결혼의 실정과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결혼중개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중개 시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를 제공하여 허위정보에 의한 결혼 후 부적응 및 갈등 요인 예방
- 현재 결혼이민자 (예정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확대 · 강화

※ [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예정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모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진행 혹은 준비 중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신 숙 자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1. 들어가며

다문화 공존사회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다각적 정책과 민·관의 노력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목표로 정책과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는 미래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은실 박사님의 발표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과 최근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상황을 정리해주셨다. 한국 국제결혼실태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현상, 한국의 결혼중개업체 현황, 결혼중개업의 문제점, 경영실태 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 주었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준 부분에 동감하며, 한국소비자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따라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 하기보다 발표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부분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다문화가족들과 지원현장에 서 있는 활동가들은 「국제결혼중개업법」시행으로 결혼중개 시스템의 개선과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업화된 국제결혼관행은 이용자의 인권 및 선택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으로 결혼당사자간의 신상 정보교환, 선택권 등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신설 또는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어떠한 경로이든 한국을 알고 한국 땅에 꿈과 희망을 갖고 결혼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실현하고자 오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은 이용자의 인권 및 선택권 부분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랑이라는 따뜻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할 결혼이 감정적, 정서적 상호존중 요소가 배제된 채 상업화에

의한 이윤추구라는 살벌한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남편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의 피해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결혼 중개업 초기에는 한국의 남편들만 지불하던 사례비도 현재는 입국 전 여성들에게도 지불하게 하고 있는 중개업체도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지나친 과욕이 부른 피해사례는 다문화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공존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이 재고되기를 바라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법령준수를 통한 인권침해 요소가 시정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법령을 위배하는 업자에게는 손해배상 등 실제적 처벌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살려내는 뜻있는 공청회가 되기를 바란다.

2. 결혼중개업법의 문제 및 현황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최은실 박사님의 연구발표는 결혼중개업 현황을 중심으로 함축적이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 대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대표자의 성별분석, 연령대, 종교, 종사기간 등은 비교적 자세하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결혼을 하는 남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피해에 관한 통계치나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또한 직업경력과 만족도에서 운영계기를 보면 “봉사/사명감/보람 등 비영리적 요소가 가장 많았다”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 토론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005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을 하면서 보아온 현상은 중개업자의 철저한 이윤을 위한 사업일 뿐, 봉사나 사명감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의 발표는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중개업자들의 잘못된 관행과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하여 전국 11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장에서 감당해야하는 짐이 되고 있다.

회원관리에 있어 내국인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혼인상태 초/재혼, 직업, 학력, 재산, 소득, 신체조건/나이, 질병관계, 가족관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구두 형식의 제공일 경우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를 때 당사자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 문서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제공하는 한국인 회원의 신상정보 제공에 있어 혼인상태 초/재혼, 직업, 학력, 재산, 소득, 신체조건/나이, 질병관계, 가족관계 등이 발표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현지에서 출발할 때 한국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만 알 뿐, 어느 지역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모국을 출발하는 여성들이 있다. 입국 후 5년 이상이 지난 여성도 남편이 회사에 간다는 것만 알뿐, 어떤 일을 하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실태에 있어 한국인 회원정보를 번역 제공한다는 66,8%의 통계 또한 의심의 여지로 남는다. 문서화된 남편의 정보를 받아본 여성들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중개 후 사후관리(96.1%) 제공 또한 의무화되어야 한다. 발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후 신부감 연결을 위한 유대관계 차원이 아닌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원상담 차원의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이 이루어질 때 부부와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원의 투입을 의무화 하여 국제결혼가정 지원 상담에 있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양측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통합적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일방적 수용의 필요성만을 요구하는 상담이 제공될 때 발생하는 제2의 정서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 열악한 경영체제
- 비전문성
- 언어번역 미제공
- 회원정보 보호의 강화
-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폐해 최소화
-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러나 비영리 성격의 국제결혼중개업 운영은 비현실적 방안으로 생각한다.

3. 나가며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라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반려자와의 만남을 얘기한다. 국가의 경계를 넘으며 결혼을 선택한 이들에게 인종, 문화, 종교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 권리로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국제결혼중개업법에 있어 이용자들이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선택의 권리가 최대한 충족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법적 보호와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비윤리적·불법적 영업 관행은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 가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이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07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가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척결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연구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은 등록체제의 국제결혼중개업이 과거와 달리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등록제도 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다.

1. 국제결혼 중개업체 실태조사 내용

먼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등록된 1,04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률이 226개 업체에 머무른 원인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조사에서 신고제 영업을 하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등록제로 변경되었음에도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가 단순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영업 관행에 변화가 없거나 투명하고 공개적인 영업활동에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2006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조사를 위해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를 시도하면서 업체들의 폐쇄성과 비밀유지 노력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2008년 기준으로 평균 8.81건의 성혼과 평균 매출 4,808만원이라는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 이정도의 성혼율과 매출액이라면 결혼중개업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영세업체가 많을수록 성혼을 위한 허위 정보나 과장 정보가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2006년 조사 이후 등록제를 채택한 현재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업 관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신고제하에서의 영업과 등록제하에서의 영업 관행에 변화가 없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다음으로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에 대한 제안부분을 살펴보자. 연구자는 개선방안의 원칙으로 현행 관리제도의 보완, 중개업체 및 중개업 협회 경쟁력 강화와 건전화,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팀이 제안한 개선 방안은 실질적으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논점들의 단순 반복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2007년 기관명)' 은 2007년 2월의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2007.2.15)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및 법 제정 의견>(최은실 팀장 발표)에서 유사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2009년의 실태조사 결과 2007년의 의견에서 보다 진전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연구가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현행제도의 보완을 외국 현지 제휴업체 관리 방안 마련과 회원 정보 보호의 강화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외국의 제휴업체 관리 방안을 국내 실정법 혹은 제도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 회원 정보 보호의 강화와 결혼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동시에 추진할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중개업체 및 협회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은 업계가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허가제' 를 요구하는 명분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난립하는 중개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업계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업체의 요구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 업체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거나 허가증을 이권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세화와 일부 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가

현행 국제결혼의 상당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내실화 및 건전화를 유도하는 실질적 개선안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익적인 결혼중개 관련 업체의 육성과 협회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만 본다면 중개업체의 자율적 정화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요원해 보인다. 발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응답 업체의 63.3%가 자율적인 협회나 단체에 가입되지 않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중개업을 정화시킬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등록된 업체들이 스스로를 견제하며 자율적으로 비윤리적, 불법적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실질적 정책 대안(규제, 관리 혹은 권장 무엇이든지)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실태조사와 문제점 파악 과정에는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온 중개업체의 '매매혼'적 중개행위, 인신매매성 중개 관행, 인권침해성 홍보 광고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 또한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하는 한국 업체의 영업 관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나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미 수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한 문제점 지적, 개선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한국 사회의 모든 논란과 비판들, 특히 2006년 이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업 관행, 국제결혼 성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내실화와 건전한 육성 등에 대해 논의되어 온 기존의 비판과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개선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실태조사와 개선안 제안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정토론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권 혁 선 ((사)한국결혼상담소협회 경기지회장)

국제 결혼 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15일 시행된지 1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연 처음 "결혼 중개업법" 입법 취지대로 고객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결혼 중개업자들이 제도권내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보장을 받는가 하는 점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중개업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으며 국제 결혼의 이혼율은 높아가고 파혼 되는 가정이 많아지며 결혼 중개업자들의 경우에도 미등록자, 불법 영업자들의 영업으로 인해 많은 중개업자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영업 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을 보호하고 제도권내에 등록한 결혼 중개업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업을 할수 있는 발전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국제 결혼 중개업의 구조적 문제

● **현재 "국제 결혼 중개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자"의 분류** 가. 결혼 중개업법에 의하여 국제결혼업으로 등록한 자 나. 미등록 상태에서 국제 결혼업을 하고 있는 자. 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실정을 알게된후 소개 형식으로 국제 결혼 중개를 하는 형태 라. 현지 국가에 체류중인 일부 한국 교민이 부수적으로 관여하는 형태 마. 현지 국가에 장기 체류하며 결혼업을 하는 한국 국적의 브로커 바. 현지 국가의 국민인 현지 마담들(주로 여성) 사. 현지 국가의 국민으로 결혼 서류 취급자(주로 남성) 아. 현지 국가의 국민인 현지 통역들 (최근 경험있는 현지 통역들이 직접 결혼 중개업에 가담하고 있는 추세임) 자. 현지에서 인력송출업에 관련된 일부 현지업자가 한국인과 결탁하여 위장 결혼 알선함	➡ 국제 결혼 중개업은 복잡 다단한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각 단계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내포되어 있으나 현재 2008년 6월 15일 시행된 "결혼 중개업법"은 "가"호 처럼 국제 결혼업으로 등록한 자외에는 국제 결혼업에 관련된 자를 파악하기 힘들고 "나"~"자"호의 사람들이 불법에 연루된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움

2. 국제 결혼의 부문별 문제점 고찰

구분	문제점	발전방향 (협회의 추진 사항)
업무 전반	● **국제 결혼 비용으로 인한 마찰** 업체마다 책정한 국가별 국제 결혼 요금이 상이하고 같은 국가라도 업체별로 결혼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이들 업체의 결혼 비용 고액수수로 인해 고객의 피해 발생 (또한 일부업체의 경우 가격 덤핑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현지에서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실정임) ☞ 최근에는 외국현지에서 인터넷상으로 가격 덤핑 광고를 직접 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됨	국가별 "표준 비용 발생 항목"을 리스트화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장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 단 이러한 권장 가격 제시가 결혼 업계의 담합 행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내재함 ■ 결혼 협회는 이에 대해 국가별 표준 비용을 만들어 합리적인 국제결혼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중임.
	● **현지 마담이나 위장 인력 송출업체, 브로커가 아래의 사실을 속이는 경우 결혼중개업체도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구조** ① 현지 마담이나 브로커가 현지 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예: 베트남 하노이 경우 1000~2000달러 수수, 중국의 경우 한화로 200만~800만원이상을 수수) ② 현지 인력 송출 브로커가 취업을 위해 한국행을 원하는 현지 여성을 결혼업체나 한국 남성에게 속이고 결혼중개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후 도주하게 하는 경우 ③ 현지 마담이나 브로커가 한국에 올 수 없는 현지 여성을 서류를 위조, 변조해 제3의 인물로 만들어 한국 남성과 결혼시키는 경우 (예: 재혼자를 초혼으로 , 아기 낳은 여성을 자녀 없는 것으로 위변조함) ▶ 외국여성 또한 거액의 금전을 마담이나 브로커에게 지급하여 빚을 진 경우 이를 한국 입국 후에도 갚아야 하므로 취업을 위해 가출을 결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제결혼 가정 파탄의 한 원인이 됨.	좌측의 사유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결혼중개업체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사기업체로 소송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결혼중개업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현지 마담이나 브로커에게 속는 경우 결혼중개업자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음 ⬇ ■ 결혼 협회는 이러한 현지마담이나 브로커에 대한 신고, 고발 센터(☎02-720-0833)를 별도로 운영하며 홈페이지(www.kmma.or.kr)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들의 명단도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이들의 명단을 각국 대사관에 제공하여 법적 제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임.

구분	문제점	발전방향 (협회의 추진 사항)
업무 전반	● **외국 현지에서 체류하며 국제 결혼업에 관여하는 자의 경우 한국의 "결혼 중개업법" 제4조의 등록제 법적용이 어려움** ① 현지 국가에서 서류등 결혼 관련일을 하는 한국 사람이 베트남의 경우 200여명이 넘는 실정임 ② 일부 국가의 경우 교민들의 40%정도가 국제결혼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예: 여행사, 식당, 무역업 등을 하는 경우) ③ 외국 현지에서 (한국인 or 현지인)이 홈페이지를 "한글판"으로 만들어 현지의 서버, 호스팅을 이용하여 한국에 광고하고 한국 남성을 모집하는 경우	국제 결혼 업무에 관련되어 외국 현지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 또는 교민들이 불법에 연관되는 경우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없으며 이들 또한 불법적인 유혹과 한탕주의에 쉽게 빠지기 쉬워 고객들과 중개업체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내재 ▶ 각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에서 국제결혼업에 종사하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들이 결혼 중개업법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법 영업자와 나홀로 영업자(가칭)의 문제** ① 한국에 온 이주 여성이 한국말을 잘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결혼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② 결혼 중개업자가 사무실을 폐업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거나 커플 매니저 출신이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 ☞ 이들이 과장 광고하거나 가격 등의 경쟁 질서를 흐려놓는 경우가 있어 기존 업체의 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짐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 영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것임. ■ 결혼 협회에서는 이러한 불법 영업자들을 각 지부별로 파악하고 보고 토록하여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현실적으로 국제결혼 자체가 불법적으로 다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결혼업자들이 범법자로 간주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현지 단속 경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실제 고객도 같이 단속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 - 맞선과 결혼식 때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 - 현지 마담이나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도 현지 경찰에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현지 경찰의 금품 요구로 금품을 빼앗기는 경우 - 현지 경찰의 단속에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경우	국제결혼 자체가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음성적인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이들 국가와의 "조약" 형태나 "MOU 등 양해 각서" 등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합법적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임. ■ 결혼 협회에서는 국가별로 이러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각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각 국가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중임.
	한국인이 현지 정부의 고위 관리와 연결되어 국제결혼 독점 업무권(예: 결혼 서류 등)을 받아 이를 행사하고 현지 경찰들을 동원하여 한국 결혼업체를 단속하여 그 독점업체와 어쩔 수 없이 거래하게 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고객들의 비용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제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	

구분	문제점	발전방향 (협회의 추진 사항)
계약 단계	● **일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유인의 문제** 예: 허가번호 00호, 캄보디아 정부 허가 업체, 베트남 정부 허가업체, 현지 직영, 우즈베키스탄 정식 법인 설립 우즈베키스탄 정부 정식 허가업체 ☞ 한국에서 파악하기 힘든 사항을 교묘히 허위로 내세워 선의의 중개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고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가입을 유도함	국제결혼 업무의 특성상 현지 정부로부터 결혼 업무에 관한 허가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 결혼협회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예정임
	● **국제 결혼 국가를 선택함에 있어 발생 되는 문제** ① 고객이 국가별 국제결혼의 장단점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주위의 얘기를 듣고 선택하여 결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고객의 사정이나 환경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업체가 본인이 거래하는 국가를 무조건 좋다고 추천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국가별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결혼협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며 아울러 각국의 문화 등의 정보도 제공하여 고객에게 맞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추후 계속 보완할 예정임.
	● **업체별 계약서, 약관의 내용상이 및 미전달** 결혼 중개업체별로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이 상이하고 ① 일부업체의 경우 고객의 피해구제와 환불 조건이 명시안된 경우가 많음 ② 일부는 계약서 작성을 하고도 고객에게 전달을 안하거나 ③ 소개로 오거나 좁은 지역 사회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 분쟁 발생 시 고객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듬	■ 결혼협회에서는 계약 양당사자의 책임을 규정한 권장 계약서(안)을 만들었으며 추후 일선 업체에 배부하여 고객의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중임. 또한 계약서를 고객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계도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객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상에 업체명단을 공개하여 주의 조치할 것임

구분	문제점	발전방향 (협회의 추진 사항)
건강 검진	● **형식적인 건강 검진으로 인한 분쟁** 건강검진을 요하는 베트남 등의 경우 단순한 건강검진 항목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베트남 여성이 한국 입국 후 질병이 발견되어 한국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함 (예: 베트남 정부가 지정해준 병원의 검진 결과를 고객과 결혼중개업체 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사태 야기)	건강검진 항목수를 실효적으로 늘리고 실질적으로 검진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병원 측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형식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함 ■ 결혼협회를 통해 가급적 한국에서 새로이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 서로 교부하기"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
맞선 단계	● **예쁜 현지 여성의 "미끼 사진"으로 영업하는 경우** 일부업체가 예쁜 현지 여성 사진을 인터넷 상에서 또는 상담 시 보여주며 이들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케 하여 계약한 후, 현지에 와서는 그 여성이 애인이 있다거나 아프다고 하며 다른 여성을 맞선 보여주겠다고 하여 실제 계약 당시 사진을 보고 선택한 여성과 맞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과의 분쟁 발생	■ 명백한 사기 영업의 일종으로 결혼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할 것임
	● **고객과 계약한 결혼업체가 현지 국가의 대행업체에 국제결혼을 의뢰하는 시스템인 경우의 문제** - 고객과 처음 계약한 업체는 현지 상황을 알 수 없음으로 맞선 인원과 현지 여성들의 신상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이 곤란함 ● **맞선 전·후 신랑과 신부의 신상 정보 제공 불이행** (심지어 결혼식 때도 서로의 이름과 신상을 모르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현지 진행업체의 경우에도 현지 맞선 여성의 모집을 거의 현지 마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맞선 여성들의 사전 신상 정보 제공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맞선 전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국 남성과 현지 여성의 신상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함. ■ 결혼협회에서는 양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기록할 "신상 정보 카드"를 제작하여 일선업체에 배포할 예정임

구분	문제점	발전방향 (협회의 추진 사항)
맞선 단계	● **현지에서 추가 비용 문제로 인한 분쟁 사례** ① 실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의 경우 추가비 발생 사례 ▷ 신랑과 신부의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 ▷ 신랑이 신부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 장애인인 경우 추가비 발생 ▷ 신부나 신부 부모님이 별도의 지참금을 요구 ② 실제로는 추가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업체가 싼가격으로 고객과 결혼 계약을 한 후 비용 보전을 위해 추가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업체 대표의 부도덕한 행태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①의 경우에는 행사업체가 정당하게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신랑에게 성실히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과 처음 계약할 당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들은 사기라고 생각하며 분쟁의 원인이 됨 ■ 결혼협회에서는 이러한 추가 비용 사례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위법하고 비도덕적인 추가 비용을 받는 업체에 대해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고발 예정
	● **제공한 신상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와 원인을 구분하여 대처해야 함** ① 실제 양당사자가 현지마담이나 결혼업체를 속이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장애를 속이거나 불고지하는 경우 (3가지- 고객이 결혼업체를 속이고 가입한 경우 현지 여성이 장애를 숨기고 맞선본 경우 결혼업체가 장애를 알았음에도 신랑의 장애 사실을 현지 여성에게 고지 안한 경우) ③ 맞선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듣고도 나중에 신상 정보를 못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④ 통역과정에서 통역이 실수하거나 부정확하게 전달하여 잘못된 신상 정보가 제공된 경우	실제 결혼업체의 경우에도 ①③④의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여 거짓 정보를 결혼업체가 제공했다는 오해를 받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상의 주의가 요망됨 ■ 따라서 맞선 후 바로 양당사자에게 양국의 언어로 작성된 "신상정보 카드"를 제공케 하고 양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명확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 ▶ 최근 이에 대한 분쟁의 대비책으로 맞선 대화를 녹음하거나 영상 녹화하여 자료로 남기는 사례가 생겨남.
서류 진행 단계	● **현지 국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신부 미입국 또는 결혼 서류의 진행 중지로 인한 고객 피해** 예: 캄보디아 국제결혼의 경우	캄보디아 국제결혼 서류가 진행이 안되어 수백명의 신부가 한국 입국을 못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과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 ■ 결혼협회에서는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캄보디아 관련 기관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구분	문제점	발전방향 (협회의 추진 사항)
서류 진행 단계	● **결혼식후 혼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① 한국 남성이 결혼 후 일방적으로 혼인 파기하는 경우 ② 현지 신부가 결혼 후 일방적으로 혼인 파기하는 경우 - 현지 남자 친구가 생기거나 또는 현지 부모들의 파혼 요구등 (이때 한국 남성들은 먼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혼하려면 실질적으로 약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됨)	현지 여성의 혼인파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②의 사례처럼 한국 남성이 1년 여 동안 재판을 해야하고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구제차원에서 절차를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지 여성의 "이혼 확인서"를 현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공증 받아 한국 대사관의 확인을 받으면 한국 법원이 이를 협의 이혼으로 간주하여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기타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혼 사기 유형(일부)** ①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결혼생활하다 한국 남성에게 베트남 부모님 집에 여행가자고 조른 후 수 백만원을 준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함 ⇒ 베트남집에서 지내다가 출발일 당일 공항으로 같이 갔다가 공항내에서 사라짐 ⇒ 한국 남성이 신부를 찾다가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되어 홀로 귀국함 ⇒ 한국에 신랑이 도착한 후 신부가 고의로 속이고 이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됨 ▶ 이때 한국 남성은 수백만원의 금전 손실은 물론 배우자에 대한 배신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② 한국 남성과 아이를 낳은 베트남 신부가 아이와 함께 베트남 집에 갔다 오겠다며 베트남으로 출국함 ⇒ 하지만 입국일에 한국에 돌아오지 않음 ⇒ 처음에는 사정이 있어 나중에 가겠다며 아이 핑계를 대며 생활비를 부쳐달라고 함 ⇒ 나중에는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함 ③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신부가 한국에 온 후 2~3주 만에 가출함 ⇒ 나중에 한국 신랑에게 연락하여, 같이 살려면 자기의 빚을 갚아주고 중국에 있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줄 것과 3개월에 1번씩 중국 방문하게 해줄 것과 잠자리는 안한다는 조건을 승낙하면 같이 살겠다고 협박함 ⇒ 만약에 신랑이 이혼을 원하면 위자료를 달라고 함	이에 대한 수법이 계속 이어짐에도 한국 남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계속됨 ■ 결혼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기 유형을 공지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각국 대사관에서도 이에 대한 신고 접수를 취합하여 대사관 차원에서 현지 정부에 수사 의뢰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임. (현지 언론에 이문제가 공론화 되어야 추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적어질 것임)

구분	문제점	발전방향 (협의의 추진 사항)
기타	● **취업을 보장하며 가출을 유도하는 브로커와 알선 조직의 적발과 검거의 필요성** 이주여성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수십,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이들 브로커와 알선 조직에 대한 방관으로 인해 신부가 가출하여 결혼 생활이 파탄 나는 가족들이 증가함 - 사회문제 야기됨 ▶ 핸드폰 번호 등의 통화 내역 조회로 가출 신부의 위치 등 알선 조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에도 관계 기관의 무성의로 인해 신랑 개인의 힘으로 가출한 신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국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끝나게 됨.	때로는 부부간의 금실이 좋은 경우에도 신부가 이러한 조직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가출한 후 나중에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알선 조직의 생리상 거의 기대하기 힘듬 (따라서 정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필요한 것임) ▶ 광역시·도별로 가출 유도 브로커와 알선 조직에 대한 "전담 수사처"를 신설하여야 함 (이들의 조직이 검거되면 또 다른 피해 가정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정부 또한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함)

지정토론

건전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 행정기관의 관련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박 강 구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가족권익담당)

건전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 행정기관의 관련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서 언

우리나라는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뿌리깊이 박혀 심각한 남녀간의 성비불균형이 야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결혼 적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 심화를 불러왔으며,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결혼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단일민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폐쇄적인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아주 극소수의 국민만이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농·어촌 남성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 조선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도시 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고 대상 국가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해 결혼인구의 약 10% 정도,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50% 정도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어 국제결혼이야 말로 최근 우리사회의 거대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한 법령, 제도 도입의 배경,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결혼중개업 관련법령

1)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제정 : ‘69. 1. 16
2)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 ‘73. 3. 13
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 : ‘93. 12. 27
4) 근거폐지로 인한 자유업 전환 : ‘99. 2. 8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발의 : ‘05. 2. 1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 ‘07. 12. 14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08. 6. 15

※ 국제결혼에 관련 법령은 ‘08.6.1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마련됨.

3. 결혼중개업관리 업무의 도입 배경

최근 결혼문화는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로 친인척과 직장 동료 등 친분에 의한 소개문화가 쇠퇴하면서 상업적인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그 도입배경은 아래와 같다.

1) 전문 결혼중개업체의 성업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증가
2) 결혼정보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및 약관사용
3) 표준약관이나 환불기준 미비, 과다한 위약금 부과, 상대방에 대한 허위 · 과장 정보제공, 인신매매 또는 인권 침해적 맞선 형태로 사회적 물의 야기
4) 결혼중개업체에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외국인 신부를 데려옴에 따라 배우자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의식 팽배, 결혼상대자에 대한 허위 · 과장 정보제공으로 결혼 후 파탄초래
5) 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정착의 필요성 대두

4.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업무는 시 · 군 · 구에서 관리하는 국내결혼중개업과 달리 시 · 도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체계의 이원화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시 · 군 · 구청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시 · 도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을 동시에 하고자 할 경우 두 곳에 민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도 중복으로 신원조회 등 행정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특히 시 · 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기관으로써의 역할과 배치되며, 행정기관의 넓은 도(道) 단위 경우 관할 구역 특성상 등록 업체에 대한 사후 지도 · 관리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2) 커플 매니저 등 종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미실시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커플 매니저를 포함한 종사자들에게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서울에 있는 인력개발원 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관련법령을 미 준수 하는 등 기본교육 미 실시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3) 미등록 불법영업행위 성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미등록된 업체들이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등록 업체들은 대표 및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범죄사실 조회 등 사전예방 절차를 거치나 미등록 업체의 경우 일체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종사자를 채용하고도 해당 관청에 종사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4) 불법적인 지사형태의 운영

결혼중개업체 등록을 각 지역에서 별도의 업체로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지사가입비를 부담하면서 전국적인 지사형태로 운영하며, 결혼중개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 본사에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받는

형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중개과정 일체에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5) 표준약관의 부재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 없이 중개업소 마다 임의의 계약서를 비치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계약내용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신랑 측에는 덤핑가격을 제시하고 이에 발생하는 손해는 이중계약을 통해 신부에게서 보전 받는 방식으로 중개를 추진하여 신부가 빚을 진 채로 입국하게 되어 가출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여 빚을 갚아감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6) 외국현지에서의 부당한 중개계약서 작성

국내에서 중개업소와 상담 후 직접 외국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맞선을 본 후 상대방이 맘에 들 경우 현지에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귀국 후 1주일 이내 중개수수료 전액을 현금으로 입금토록 하고 있어, 현지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지 못하고 계약에 서명하거나, 의사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소비자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없이 계약을 체결해 신부가 입국하기도 전에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급하고도 입국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추가경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7) 현지 국가의 실정법을 위반한 무리한 중개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자국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국제결혼을 금지시킨 외국현지의 법령을 무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중개를 강행하여 1년 이상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는 물론 외국정부에게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캄보디아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다수의 사례가 있다.

8) 결혼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 및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 남성의 경우 고령자나 일용근로자 또는 생활여건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혼을 단순히 상대국가에서 여자를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함으로 인해 결혼 후 언어, 문화, 풍습에 대한 차이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 결혼 초기에 파탄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상대국가에 한국의 이미지 실추와 해외무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9) 예치금 및 보증보험 등 제도 불합리

현행 법령에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국제중개업의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명의로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구시의 경우 50개 등록업체중 1건도 없는 명시 규정으로 되어있으며, 보증보험의 경우 대부분 등록시 1년 기간으로 보증보험을 제출하여 1년 경과 후 보증보험 제출시 별도 변경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등록업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등록신청 후 신원조회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과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5.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위에서 지적한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의 발전 방안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체계의 일원화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체계상의 특성 반영, 소비자의 접근성 확보 및 등록 · 신고된 중개업체의 사후 지도 · 감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관리 업무를 일선 시 · 군 · 구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

2) 종사자 전체에 대한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의무적으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를 제외하고도 커플 매니저와 같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에 관한 기본 직무 교육과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국을 순회하여 연 1~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소양 함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미등록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된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등록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강력한 단속실시와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불법영업을 한 업체에 대하여 신고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불법적인 지사형태의 운영 근절

지사형태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본사를 통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중개 영업토록 지도하고, 독립된 형태로 지역에 주 사무소를 설치하여 중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영업 및 각종 영업활동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 한 채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5) 표준 약관의 제정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혼중개업과 관련한 협회나 단체들과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전 구제책을 마련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과다한 중개 수수료 수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6) 외국현지에서 계약체결 금지 및 결재방식 개선

결혼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일체의 후견인을 제외한 남성 고객만을 데리고 외국현지에서 맞선을 보고 상대를 선택하면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출국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계약금을 내고 신부가 입국한 후 중도금을 지불하고, 혼인 신고 등 일체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완불토록 제도개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세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의 결재 방식을 다양화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해야 할 것이다.

7) 현지 국가의 실정법 준수

현행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지침에 의하면 현지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위반자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가 통보받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통보하고 다시 해당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도 소비자로부터 현지 국가의 실정법 미 준수 사항을 신고 받을 경우 이를 조사해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토록 벌칙규정을 개정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8) 국제결혼 희망자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 제도화

국제결혼을 원하는 대상자의 경우 사전 다문화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 운영하는 “국제결혼 정보프로그램” 참여, 베트남의 조혼제도, 자녀 출산 후 혼인 등 사전 정보 획득으로 인한 국제결혼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결혼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언어, 문화, 풍습 등에 대한 준비로 결혼 초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중개업체에서 결혼을 중개함으로써 가족간, 경제적 문제 등 사전 갈등 해소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외국인 신부의 경우 한국에 입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한국에 대한 기초 언어와 문화 이해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9) 예치금 등 불합리한 법령의 보완

예치금의 경우 우리시는 8월 현재 보증보험 처리로 50개 등록업체 중 한건도 없는 명시적 규정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폐지가 필요하며, 만약 중개업체가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할 경우 피해 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접 당사자로 시·도가 책임의 중심부에 있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며, 보증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변경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에서 시·도에 통보로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신원조회의 경우 개인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국제중개업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민원처리 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청과정에서 종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 있다.

6. 결 론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다문화 사회의 건설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가꾸어 갈 경우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또 다른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사회가 얼마만큼이나 잘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잘 적응 하도록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 건설에 있어 국제결혼중개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에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법 시행 1년이 된 지금,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떠한 규제와 처벌로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국제결혼중개업 대표 및 종사자들이 대한민국의 인지도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적 동기를 넘어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할 때 국제결혼중개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지정토론

국제결혼중개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자문위원)

국제결혼중개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1. 다문화 가족의 부상과 국제결혼중개업

200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2005년에 정점을 이룬 뒤 다소 하강 정체된 양상을 보여주지만, 2008년 기준 전체 결혼의 11%를 차지할 만큼 국제결혼의 비중은 적지 않다. 해마다 대략 3만~4만 여건 내외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90년대 초반까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현상으로 당시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외국인과의 혼인 총 36,204건 가운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8,163건으로 국제결혼의 약 78%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들은 주로 다양한 이유로 결혼시기를 놓쳤거나 한국여성과의 결혼이 용이하지 않은 도시의 중하층과 농촌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며(2004년의 경우에는 농어촌 혼인의 27.7%, 2005년 35.9%, 2006년에는 농어촌 남성 결혼의 41%가 국제결혼(양순미, 2006:156)), 이들의 결혼은 사설중개업자나 종교단체, 친구나 친척의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급속히 증가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고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제결혼은 결혼당사자간의 애정과 신뢰뿐만 아니라 결혼당사자는 물론 해당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전적 이해 등과 같은 필수요건 등의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시장의 논리만으로 운영되는 결혼중개업체의 중개현황과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관련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도·관리의 지침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이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한 1,040개의 업체 가운데 설문에 응한 266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출규모가 연간 1000만원 이하인 업체가 36.9%에 달할 뿐만 아니라 사장 1인이 커플매니저를 담당하는 곳도 7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곧 국제결혼중개업의 영세성과 전문성의 취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 결혼중개업체 가운데 45%가량이 2008년도에 설립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들 결혼중개업체의 약 87%가 결혼중개업이 본업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곧 이들이 국제결혼중개의 성사여부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국제결혼의 취약성과 문제점

주지하듯, 현재 주류를 이루는 국제결혼형태는 대개 맞선부터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극히 짧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불충분한 상황에서 결혼이 성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를 매개하는 경우 결혼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형식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은 가족 형성기부터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취약성은 이들 결혼의 급증과 동시에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이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부부간 상호 이질적인 문화에서 기인하는 적응의 어려움과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의 불안정한 사회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가족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으며, 때로 일정한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하거나 그들이 결혼조건으로 이주자 여성의 친정식구나 결혼 전 자식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기로 약속한 비율도 적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부부 및 가족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은 기존 연구결과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바 있다. 더욱이 내국인끼리의 결혼에 비해 국제결혼은 상대적으로 상호 소통과 이해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쉽게 위기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과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한편, 2008년 한해동안 외국인과의 이혼은 총 11,255건으로 총 이혼건수(116,535건) 대비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율 또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는 2003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약 45.4%, 2004년도 176.3%, 2005년 51.7%, 2006년 64.1%, 2007년 44.5%씩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또한 이들 이혼의 특징적 양상은 국제결혼 초기에 와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6년에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동거기간 가운데 4년 이하의 비중은 79.9%로 이 가운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경우 90.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결혼은 짧은 기간 내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혼한 이주 여성가운데 20대는 39.6%, 30대 29.7%, 10대 5.4% 국내 이혼여성에 비해 이주이혼여성들의 연령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표 1】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자료 : 통계청, 2009.4월

다문화가족의 높은 이혼율과 위험요인은 무엇보다 국제결혼이 출발부터 상당히 왜곡된 정보와 결혼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계기를 살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결혼 이면에는 남녀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결혼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 과정 부터 상호 기대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모든 다문화 가족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한국 남성들은 급속한 문화변동을 통해 점차 향유하기 어려운 가부장적 결혼관계를 국제결혼을 통해 획득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3세계의 여성들은 본국남성들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한 단계 더 나은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녀의 기대격차는 때로 이들 결혼 및 부부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모두 배우자 선택과정에서부터 결혼에 대한 상호 기대격차의 조율은 물론 상호이해와 정서적 교감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교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의 사전제공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현지에서의 입국 전 현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한국인 예비배우자에 대하여는 결혼준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만남을 제공하고 이들의 성혼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결혼중개업의 역할강화와 이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관한 것이다.

3. 건강한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8.12.31 현재 신고(국내) 571개 업체와 등록(국제) 92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비록 결혼중개업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상당부분 악의적인 중개과정은 제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간 결혼을 업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이미 신고제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합법화되었다. 가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위한 상업적 매개자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결혼관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결혼에 대한 높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 다양한 친밀성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인정보다는 여전히 제도화된 결혼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한국사회의 이중적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미 합법화된 결혼중개업에 대한 도덕적 판단보다는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이를 시장기제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결혼 중개업의 건강한 활성화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 업체의 영세성과 매출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이들 업체는 향후 시장 논리에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업의 차원에서라도 영세업체들은 과도한 성공률 보장을 위한 허위정보제공이나 사전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결혼 성사를 위한 무리한 영업행위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2008.6.15부터 시행되어온 결혼중개업관련 법률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의 최소한의 요건과 이들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상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이들 업체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개인들이 잘못된 국제결혼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리규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요한 위반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마련함은 기본이며, 나아가 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중개업체의 건강한 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결혼 성립으로 인한 수수료는 국가와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200~350만원 가량으로 전체 국제결혼비용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요비용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적정 수수료의 표준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함은 물론 과도한 이윤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방식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발굴하고 이들을 홍보함으로써 건강한 중개업체는 육성하되, 열악하고 문제적인 업체는 도태될 수 있도록 부실업체에 대한 정보제공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육성과 규제의 묘안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조사대상업체의 응답결과, 관련협회 가입율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에는 관 주도의 관리 못지않게 중개업체의 자율적 정화와 관련정보제공을 통한 업체의 자조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결혼중개관련 협회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인 정보교환은 물론 자신들의 자율적 규제 및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작동됨으로써 결혼중개업자들간의 공론의 장을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간 교제와 이에 근거한 결혼 혹은 결혼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역할은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안적인 국제결혼중개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결혼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의 의무나 관련 법률제정 등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간혹 발견되는 지자체 차원의 국제결혼관련업무는 향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주도의 결혼중개사업은 아니지만 동시에 시장 기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과 mating 해당국가와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결혼대상자에 대한 성실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국제결혼 대행자 모색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주로 민간섹터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다양한 제 3의 섹터에서 이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해주는 것으로 직접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와 국제결혼기회만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소 라 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1. ‘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결혼이주자에 대한 법적용 명시

현행 법 제10조는 1항에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살펴보면 동 조항은 서면 계약서 체결의 조건으로서 “수수료·회비·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 국제결혼 중개 구조 하에서 중개 수수료의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인 남성의 몫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한국인 고객으로 한정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나아가 시행령 제3조는 동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용자에게 번역본을 제공할 것과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0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시행령 제3조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법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결혼이주자가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법 제2조 정의 규정에 ‘이용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동 법이 수수료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이주자까지를 포괄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2005년 「국제결혼중개인 규제법」은 정의 규정에 “외국국적고객”이란 항목을 두고 “~(중략)~국제결혼중개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이 용어는 국제결혼중개인의 서비스를 통하여 미국에 살게 된 외국인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전정보제공 의무 강화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알선에 의한 성혼과정에서 가장 큰 인권침해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촉 상담소인 한국가정상담센터도 2009. 3. 사례 분석을 통해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이들 가운데 44%가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1] 특히 정신지체 장애의 경우 장애 소지 당사자 또는 결혼중개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성혼된 경우 그 혼인관계는 조기에 파탄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다양한 실태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4~5일간의 짧은 일정에, 미인대회 선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맞선 과정에서 평생 반려자를 결정하는 시간은 단 1시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대량 속성으로 성사되는 국제결혼의 지속 가능성은 국제결혼 증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더욱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사전에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현행 법령은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서면 계약서 작성 및 설명 의무'를 부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으로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동 법은 예비 배우자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의무,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부 법령인 시행령에 와서야 '계약서의 번역문 제공'과 '결혼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상정보 제공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2] 그마저 제공해야하는 신상정보의 범위는 "민법 제816[3]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

1) 국민일보 2009. 3. 26. 이지현 기자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3)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상 정보"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 형식 또한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업체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형사적 제재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규 현실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의 실질적인 현실 규범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발생했던 한국인 남편의 구타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제공되어야 할 정보 범위에는 반드시 폭력 전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 장애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성혼했다가 이후 장애 사실이 발각되어 조기에 혼인 파탄에 이른 국제결혼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체 장애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여부까지도 반드시 사전에 예비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가정상담센터가 분석한 '결혼이주여성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부부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성격차이(33.4%), 생활방식의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문제(11%)라고 보고하고 있다.[4] 이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경제능력과 음주력 등은 혼인 생활의 결정 및 지속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능력과 알코올 중독·약물 중독 및 전력 또한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서면으로 보관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 제공 시기는 최소한 결혼 의사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의 상위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그로써 위법한 중개 행태에 대하여는 영업정지·폐쇄조치 및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정비가 시급하다. 제공해야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건강상태, 폭력전과, 혼인력, 소득및직업상태, 주거환경, 가족사항, 알코올력"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개업체로 하여금 당사자로부터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현주거지 사진,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공받도록 하고 이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여야

---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4) 국민일보 2009. 3. 26. 이지현 기자

할 것이다. 만약 중개업체가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만연히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이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개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나감으로써 건전하고 책임 있는 국제결혼중개행태를 담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개입 방안 마련

1) 외국현지법령준수 조항(현행 법 제11조[5] 및 시행령 제4조[6])의 실질화

현재 국제결혼 중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 상업적 결혼중개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직접 현지에 자회사·지부 형태로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알선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현지인 운영의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이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연계하여 국제결혼 알선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와 같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현지 국제결혼 중개 행위는 한국과 해당국가간에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음성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 과정에서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한국 정부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법 제11조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안 제5조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로 축소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정부에 의한 현지 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베트남·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 사법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외국 현지 법령 준수 의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법 제11조 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렇다면 결국 베트남 등 영리 목적의 결혼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업적 결혼중개에 대한 실질적 규제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살려 현지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현지법령 위반 행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 신고가 현지 외교통상부 창구를 통해 접수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2) 현지 맞선 과정에서 한국인 중개업체의 정보제공 확인 절차 의무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람간의 만남을 알선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의 속성 상, 현지에서 발생하게 될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내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본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현지에서 현지 중개인이 이주여성에게 부정확하거나 왜곡·은폐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후 발생하게 되는 혼인 파탄 및 인권침해의 문제를 단순히 ‘관할권’의 문제로 치부하고 손 놓아버린다면, 이는 한국 결혼중개업자들의 탈법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지 맞선 당시 성혼 결정 이전에 한국 측 중개업자는 반드시 예비 결혼이주자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서면으로 한국인 예비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예비 배우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이 역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형사적 제재 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최소한 해외 업체에게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 협력 업체 관련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추가 규정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를 연계하는 국제결혼 알선에 있어서 현지 업체 또는 현지 개인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사전에 양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현지에서의 인권적인 맞선 진행 등을 국내법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현지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항을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시 제출해야할 등록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지 협력 업체에 대한 등록 사항으로는

기본 인적 사항 및 주소지,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 인가를 받았는지, 인신매매 등 범죄에 가담한 적은 없는지에 대한 현지 사법 당국의 인증, 사전 정보 제공 절차에 대한 합의와 책임 등에 대한 협약 사항 등을 등록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입증책임 완화 필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기위해서 이주여성은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해야 하는데, 국제결혼중개라는 위계적 사슬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처한 이주여성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간과되어 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5. 형사 처벌 강화 및 인신매매적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 도입 필요

이후 장기적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적인 중개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 위반시 이에 대해 부가되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의무규정을 위반시 단순한 행정적 제재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형이 미약하여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규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한국은 미국 또는 국제기구의 여러 보고서에 인신매매 경유국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국제결혼의 경우 인신매매의 경로로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사법적 개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신매매 사례가 보다 많이 신고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인신매매피해자에게 적극적 체류 지원 및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 거주 쉼터 지원 등을 통해 인신

매매 피해 사례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이후 인신매매적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MEMO